

##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활동 경험과 과제 -권익옹호의 관점에서

김효정<sup>1</sup>, 박인환<sup>2</sup>, 최윤영<sup>3\*</sup>

<sup>1</sup>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전임연구원, <sup>2</sup>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up>3</sup>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Experience and Task of Public Guardianship Service Activity for the mentally disabled -in Perspectives of advocacy

Hyojung Kim<sup>1</sup>, Inhwan Park<sup>2</sup>, Yunyoung Choi<sup>3\*</sup>

<sup>1</sup>Researcher, Korean Research Center for Guardianship and Trusts

<sup>2</sup>Professor, Inha University Law School

<sup>3</sup>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elfare, Baekse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후견법인 후견업무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을 통해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후견의 권리옹호의 가능성과 시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 등이 도출되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정신장애인, 공공후견, 권익옹호, 정신건강복지법, 후견법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xperiences and challenges of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project for the mental disabled as a system of supporting the decision-making and the rights advocacy. For this purpose, interviews with 11 social workers who act as public guardians were conducted and a model of practice was suggested through analysis using the grounded theory of Strauss and Corbin(1998). As a results, the possibility of rights advocacy through public guardian services for the mentally disabled, the positive change of attitude of the facil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direction for the restoration of rights for the mentally disabled were derived. Public guardians experienced excessive empowerment of their guardians or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their duties, but were also able to defend the rights of the mental disabled and support self-determination right. Through this study, expansion of budgets and expansion of beneficiaries for public guardianship services,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for integration in the community, set-up a support organization for public guardian services and Raising awareness of the mental disabled and public guardian services were suggested.

Key Words : Mental disabled, Public guardian, Rights advocacy, Mental Health Welfare Act, Guardian corporation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6S1A3A2924706)

\*Corresponding Author : Yunyoung Choi(yychoi@bu.ac.kr)

Received April 1, 2019

Accepted May 20, 2019

Revised May 2, 2019

Published May 28, 2019

## 1. 서론

구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지를 목적(제1조)으로 1995년 제정되었다. 동법 제2조에는 기본이념으로 모든 정신질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의 보장,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의 금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항상 자발적 입원 권장, 자유로운 환경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었다. 구 정신보건법의 시행과 함께 입원환자가 증가하였고 보호입원제도의 형식적 행정 운영은 장기입원으로 이어져 법 제정의 본래 목적인 치료와 사회복지의 명분은 사라졌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1].

최근 정신장애인의 권리증진, 권익옹호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의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존중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문 개정되었다. 동법이 2017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법개정의 취지에 따라 기존에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던 비자의입원 환자를 자의입원(특히 동의입원의 경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입원에 동의를 하는 등 정신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 권리를 갖춘 성년후견인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무연고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후견개시절차 등에 있어서 가족·친지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반면에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이나 치매관리법에서와는 달리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 이용지원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동법 제2조 제8항에서는 동법이 실현하여야 할 기본이념의 하나로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이념을 존중하여 보건복지부는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후견 이용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공모를 거쳐 정신장애인들의 의사결정지원과 권익옹호 활동을 담당할 기관으로 4개 공익법인을 선정하였다. 이들 법인들은 정신요양시설 입소, 치료, 그 외 행정업무 등에 대해 정신장애인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리를 옹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제 이 사업이 시행된 지 2년여가 경과되었다.

이 시점에서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공공후견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공후견서비스 수행기관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공공후견서비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공공후견활동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후견제도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옹호에 있어서 본래 취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개선점과 향후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실질적인 업무 수행자들을 경험 분석을 통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 2.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에 대한 연구동향

장애인 권리옹호에 대한 초기 연구는 외국의 권리옹호제도에 대한 소개와 분석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1,2].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의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도입을 위한 연구들이[3,4] 시도되었다. 정신장애인의 권익 옹호에 관한 연구들은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고찰[5,6] 또는 인권침해 실태 보고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7,8] 등이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에 대한 영향요인을 가족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9-11]와 정신장애인의 권익 옹호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의 적용에 대한 연구 [12,13]가 진행되었다.

최근 들어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실질적인 경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 정신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활동에 대한 실질적 경험과 관련된 연구는 정신장애 당사자의 권익옹호 활동 경험에 대한 연구[14,15]가 없지 않았지만 공공후견사업에 의하여 공적 지원에 바탕을 두고 법적 권리를 갖게 된 공공후견인에 의한 권익옹호활동과 의사결정지원활동은 최근에 이르러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이전의 정신장애인 권익옹호활동과는 구별되어 어떤 경험과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3. 연구방법

### 3.1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로서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11명을 대상으로 2018년 8월 20일~21일 ‘정신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공공후견서비스 활동의 경험과 과제’에 대해 Table 1과 같이 FGI를 진행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Participants	Social work experience	Guardian experience	Regions
participant 1	15years	1years	Seoul
participant 2	20years	6months	Eumsung, Chungju
participant 3	3years	4months	Gapyong
participant 4	4years	10months	Daegu
participant 5	11years	1year1month	Daegu, Kyungbuk, Jeonbuk
participant 6	16years	8months	Daegu
participant 7	7years	6months	Gyeonggi
participant 8	4years	6months	Chungnam
participant 9	4years	6months	Busan, Gyeongnam, Ulsan
participant 10	7months	7months	Daejeon
participant 11	7months	7months	Seoul, Gyeonggi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 인터뷰를 통해 수행되었다. 질적 연구방법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현상에 대해 그 숨겨진 본질을 탐구하는 연구의 장점이 있으며, 근거이론은 참여자의 개인적,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밝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정신장애 공공후견법인 실무자들의 경험에 대한 실체와 문제점 등에 관해 구조화할 수 있는 모형을 탐색하는데 적합하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17]을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여 현재 정신장애인 공공후견 법인들이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겪는 경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는 2017년 6월부터 시작하여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초기의 공공후견서비스 활동과 운영경험, 운영 과정 중에서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근거이론이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후견법인의 사회복지사들이 정신장애요양시설과 공공기관 및 지자체, 그리고 피후견인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의 결과를 발견하고 그 함의를 찾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후견법인 실무자의 상황인식정도를 알아보고, 구조화할 수 있는 모형을 발견함으로써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의 내실화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3.2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하기에 앞서 연구의 주제와 연구목적, 인터뷰에 참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단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인터뷰 내용에

대해 비밀이 유지되고 익명성을 보장하며, 참여자가 인터뷰 도중 중단을 원할 시에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며 연구 참여와 개인 정보의 활용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에 인터뷰를 위한 질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현장에서 인터뷰 내용의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연구자의 편견에 의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내용의 타당성과 과잉해석 방지에 대한 검토를 받아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 4. 분석결과

본 연구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를 근거로 과 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의 비교분석의 과정을 거쳐 총 142개의 개념과 45개의 하위범주, 19개의 상위범주를 도출하였으며, 개방코딩에서 얻은 개념을 범주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1 인과적 조건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법인으로 선임된 배경은 4개 법인이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전국적인 인프라 확보 등 기본을 갖추고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시설에는 당사자분들도 많으니까. 워낙에 정관에도 당사자 권익보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으니 전국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참여자 7)*

*전국단위에 인프라가 좀 확보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300개 넘게 있고, 확원시설은 2018년 현재 280여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인프라를 확보해서 시설과 함께 공공후견사업을 하면 좋겠다...(참여자 8)*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으로 급히 시행된 측면이 있었으며 '정신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지정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후견법인으로 선임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지정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정신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고 공공후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보건복지부가 공공후견법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경험을 갖고 있는 법인이 선정되어 법인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 시

작하였다.

#### 4.2 맥락적 조건

공포를 통해 선정된 후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인들은 법원, 은행,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관련된 기관들은 후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통일되지 않거나, 혹은 법원의 판결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제각각인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경우 순환업무로 인해 후견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가 될 즈음이면 새로운 담당자로 변경되면서 후견에 대한 이해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업무 연속성에 있어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지자체에서도 이것이 생소하다보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고 저희도 법원에 청구를 내야 하는데 이렇게 일죠. 당장에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선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 저희가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참여자 7).*

*법원의 실무권도 자리 이동이 심하고 시청, 군청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분명히 몇 달 전에 통화했을 때는 서로 상황 설명하고 이해해서 바로 서류를 떼주었는데, 몇 달 뒤에 가면 바뀌어서 전혀, 서로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새롭게 설명하고 새롭게 시간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법원에 허가를 받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참여자 5).*

특히 공공후견서비스와 관련된 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이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가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담당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은 과도한 보호 또는 현존 능력이나 의사표현 무시로 이어질 수 있다.

#### 4.3 중심적 현상

본 연구에서는 후견인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권한과 관련 기관의 후견인에 대한 의존(피후견인의 개입기회 제한)으로 나타났다. 공공후견법인들은 시설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공공후견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후견인 선임과정에서부터 피후견인인 정신장애인의 능력이나 상태와는 상관없이 신청한 것보다 과도한 권한이 주어지는 상황을 겪게 된다.

*장애인들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나치게 너무 자기 권한을, 특히 피후견인의 인격 플러스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인권침해요소까지 있다고 보았는데. 그렇게 판결문이 세부적이고 광범위하게 나왔다는 것이 큰 문제인 거 같아요.(참여자 5)*

*재산관리도 해야 되니까, 매달 재산조회를 해야 돼서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하고, 투약 현황이나 간호 일지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나 시설에서도 조금 아직까지는 불편감을 보이고 있어요. 처음보다 덜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부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참여자 1)*

또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시작된 후견활동으로 인해 피후견인인 정신장애인들은 오히려 의사소통능력이 없는 대상으로 인식되거나, 후견인 지정 이전에는 할 수 있었던 일들-예를 들어 은행에서의 출금, 시설에서의 지출 등-에 제약이 발생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후견인이 지정됨으로써 피후견인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거나 피후견인을 우선시 하기보다는 후견인에게 의존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 4.4 중재적 조건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건은 ‘공공후견 기관 간 유기적 연대’와 ‘원활하지 못한 업무협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후견서비스를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법적인 문제와 얽혀 있으므로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실무자끼리의 사례회의와 4개 법인의 실무자 모임, 변호사와의 슈퍼비전, 온라인을 통한 소통 등을 통해 경험을 쌓고 상의하며 공공후견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도 실무자들끼리는 사례회의를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시면 하시고 보조인들은 분기마다. 분기마다 사례회의를 같이 하시고, 보조인들은 전담인력이 많고 있어요. 한 명씩 매칭을 해줄 때 맡고 있어서 유기적으로 바로바로 처리하려고 하고.(참여자 7)*

*후견 업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매 뉴얼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협회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긴 하거든요.(참여자 8),

하지만 여러 기관이 관련 하는 서비스이고 후견사업만 담당하는 관청이나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에 더해진 업무로 인식되다 보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 공공후견법인들은 법인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 4.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은 당면한 문제 또는 경험하고 있는 중심 현상을 어떠한 방향으로 다루어가기 위해서 취하는 의도적인 행위들로 증재적 조건과 현상간의 역동적인 반응과정으로 나타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피후견인의 권한과 자기결정 지원을 위한 노력’과 ‘시설에 대한 설득’으로 나타났다.

*저희가 의사소통이 되고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한점후견 권한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특정후견으로 바꿔 달라고 청구를 내고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참여자 7),*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서면은 어려운 말이 많으니까 쉬운 말로 풀어서 말씀 드리면 ...보통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피후견인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시고(참여자 10),*

공공후견대상자들이 시설에 입소되어 있기 때문에 후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후견법인들은 정신장애인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후견인과 같은 외부인의 출입이 거의 없었던 시설에서는 후견인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거나 혹은 후견인에 대한 업무를 이해하지 못 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도 소통이나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시설을 설득하고, 후견업무에 대해 이해를 제고하는 등 노력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4.6 결과

결과란 현상에 대한 대처전략으로써 작용/상호작용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결과물로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긍정적 태도 변화’, ‘정신장애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으로 볼 수 있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후견활동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반영할 수 있는 경험도 하게 된다. 또한 피후견인들이 후견인과 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등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후견서비스는 피후견인분들과 1:1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서비스다 보니까 관계를 통해서 피후견인분들이 회복되고 그분들의 그런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시면서 저희가 편이 되어 드리니까 권리가 회복되고 좀 더 자기가 용돈 쓰고 싶을 때 말씀을 더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와 닿는 권익옹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10)*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시설에 대한 설득, 후견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조금씩 넓혀가면서 시설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는 폐쇄성이 강한 시설이었지만 후견인이라는 외부와의 접촉을 통해 정신장애인 당사자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쓰고 조심하거나 후견인에게 당사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 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인프라가 너무 없는 거 같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퇴소를 하고 싶다. 위험을 감소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고 퇴소를 했을 때 당장 그분들이 나가면 위험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적고, 나갔을 때 취업을 하는 활동하는 인프라도 너무 적고, 지금 복지부에서 커뮤니티케어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너무 제한적인 것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2)*

정신장애인에 대한 후견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무자들은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잡아 가게 되었다. 즉, 현재의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공공후견의 개선점과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후견서비스의 운영경험에 대한 상황모형을 Fig. 1과 같이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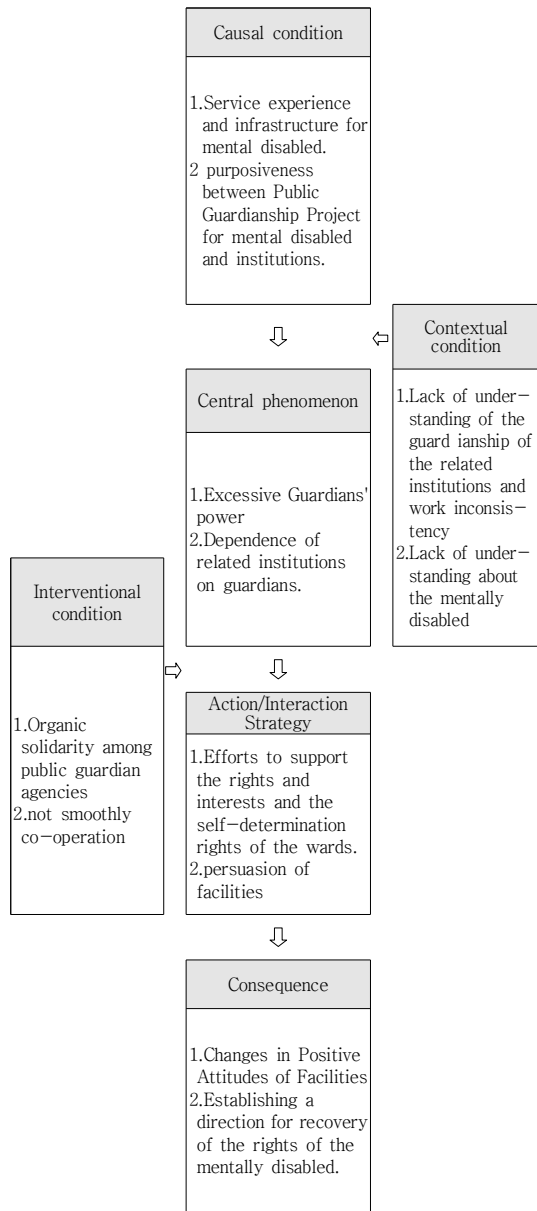


Fig. 1. Model the Experience of Public Guardianship Service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사업이 실시된 지 2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을 옹호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공공후견활동은 시설에 있는 정신장애인들의 권익옹호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후견인 선임으로 인해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시설이 외부와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되고 개방적인 태도변화를 보였으며, 그동안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했던 혹은 그들의 의견을 이해받지 못했던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후견인을 통해 이해받게 되면서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 등 권리를 옹호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공공후견인 선임으로 인해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은행 등의 기관으로부터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됨으로써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이 제한되기도 하였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제도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을 옹호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현행의 성년후견제도가 대항적 의사결정의 위험이 있으므로 '지원적 의사결정'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이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공공후견인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주는 대리인처럼 인식되거나, 공공후견인에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과 공공후견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정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활동은 2017년 6월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성년후견이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이 미비한 상태에서 공모사업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의 궁극적 목적인 탈원화와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인프라 역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의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요양원 입소자 외에 지역사회 거주 정신장애인당사자가 공공후견이나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의 시급성과 서비스 대상자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탈원화와 지역사회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절차보조인 및 정신장애인주거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유형별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활한 서비스를 위

한 공공후견서비스 지원단 설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관련기관 및 대국민관련 적극적 홍보를 통해 당사자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S. Y. Lee. (2009). A Study on the Advocacy System in Japa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44, 303-326.
- [2] S. H. MO, S. Y. Lee & E. H. Choi. (2011). A Study on the Advocacy Systems in Korea and Japan for the Elderly in Need of Long-Term Car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1), 98-126.
- [3] S. T. Lim. (2012). "Discussion on the legal measures for introducing the advocacy system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iscussion for institutionalization of advocacy for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 joint committee for institutionalizing advocacy for the rights of the disabled*. 2012. 11. 16.
- [4] C. U. Je. (2015). Legislative Task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CHONBUK LAW REVIEW*, 44, 153-182.
- [5] K. H. Kim & S. C. So. (2009). Local administration and human rights of the mentally ill: On the basis of a comparative analysis of mental health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13(1), 35-65.
- [6] H. W. Kang. (2010).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the Persons with Mental Disorders, *Mental Health & Social Work*, 35, 5-50.
- [7] Y. H. Na. (2008). A Case Study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 of the Mental Disabilities. *Mental Health & Social Work*, 29, 389-419.
- [8] M. K. Seo, J. H. Kim & J. H. Lee. (2008). A Study on Types of the Violation on Human Rights of the Mentally Ill within Mental Health Facilities. *Mental Health & Social Work*, 29, 330-367.
- [9] O. K. Yang, (1995). Families of the Mentally Ill—Care Burden, Coping, and Service Needs.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4(3), 809-829.
- [10] J. S. Ha & K. E. Bae. (2008). The Effectiveness of Program to Promote Empowerment and Self-Advocacy of the Mentally Disabled Persons' Families. *Korean Parent-Child Health Journal*, 11(1), 73-83.
- [11] M. O. Choi & H. M. Kim. (2008). The study on the Effect of the Advocacy of the Mentally ill - on the focus family adaptability and the family cohesion, perceived stigma and coping method. *SOCIAL SCIENCE RESEARCH*, 24(4), 249-275.
- [12] Y. H. Kim, H. L. Lim, Y. R. Kim, J. H. Lim & M. S. Hyun. (2012). The Effects of a Rights Advocacy Program for Mentally Ill Person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9(1), 16-23.
- [13] M. K. Yoon, J. W. Lee & S. S. Song. (2014). The Influence of the Instructor-Program on the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for the Mental Disabled in Gyonggi Province. *Korea Academy Of Mental Health Social Work Journal of Academic Presentation*, 2014(5), 433-435.
- [14] J. W. Park. (2018). Practical Tasks for Rights Advocacy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 *Guardianship and Trusts*, 1(2), 113-134.
- [15] H. M. Kim & J. S. Yu. (2018). The Experiences of the Advocacy Activities of the People with Psychiatric Disorder.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41, 59-85.
- [16] Y. Y. Choi. (2017). Experience and practice task of operation of corporation guardianship service for a vindication of the right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36, 61-82.
- [17] A. L. Strauss & J. M. Corbin.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Sage Publication.

김 효 정(Kim, Hyojung)

[정회원]



- 1994년 2월 : 상명대학교 예술대학 (예술학사)
- 2002년 8월 :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 2015년 2월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사회복지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연구원
- 관심분야 : 노인복지, 지역사회복지, 의사결정지원
- E-Mail : hjkim108@hanyang.ac.kr

박 인 환(Park, In-hwan)

[정회원]



- 1988년 2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 1995년 2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200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민법, 인권 및 권익옹호, 성년후견제
- E-Mail : ipark@inha.ac.kr

최 윤 영(Choi, Yun-young)

[정회원]



- 1994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문학사)
- 1996년 8월 :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 2002년 2월 : 독) 브레멘대학교 장애인복지(Diplom석사)

- 2005년 4월 : 독) 브레멘대학교 장애인복지(Dr.phil.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권리옹호, 성년후견제
- E-Mail : yychoi@bu.ac.kr